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19가단1421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천

담당변호사 권오천, 구태형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지

변론 종결 2021. 10. 26.

판결 선고 2022. 1. 18.

주 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9. 3. 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0,086,98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86,98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C에게 1억 원을 대여한 후 그 중 28,701,877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31625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2) 위 소송에서 2013. 12. 3. 원고와 C 사이에 "C은 원고에게 28,701,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 3) 2021. 5. 13.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권액은 100,086,983원[=28,701,877원 + 71,385,106원(=28,701,877원 × 0.3 × 3026/365)]이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90. 11. 21. E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었는데, E가 2019. 1. 30.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처인 피고(법정상속분 3/9)와 자녀들인 F, C, G(법정상속분 각 2/9)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 2) 위 상속인들은 2019. 3.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전부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위 분할협의를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5. 8. 25. 채권최고액 18,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H단체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② 2009. 5. 8. 채권최고액 348,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H단체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9. 4. 10.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I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회신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2019. 3. 8.)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와 36,226,000원의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적극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3)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2/9)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졌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는바, 이와 같은 분할협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C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망인이 C에게 부동산의 구입자금을 증여해주었고, C의 채무변제를 위해 돈을 증여해 주는 등 사전 증여액이 크고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근저당권채무 등이 존재하여 C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C의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고, 피고 외 다른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마찬가지로의 효과로 피고에게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특별수익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설령 C의 악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사전 증여액 466,000,000원(① 서울 도봉구 J 토지 및 지상건물 매입자금 126,000,000원과 ② 망인이 K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증여한 340,000,000원) 및 망인의 채무 406,307,396원(③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19,000,000원과 ④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담보대출채무 287,307,396원)을 고려하면 C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C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한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고,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된다. 한편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는 망인이 2003년경 서울 중랑구 L 건물을 매각한 금원 중 126,000,000원을 C이 서울 도봉구 J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입하는자금으로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서울 중랑구 L 건물의 2003년 당시 소유자는 망인인 아닌 M인 점, 위 126,000,000원을 C이 증여받았다는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N의 증언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망인이 C의 채무변제를 위해 34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9. 5. 8. 대출받은 2억 9,000만원 중 1억 6,800만 원이 출금되고 같은 날 C의 대출채무 167,999,990원이 상환된 사실, 망인이 2009. 6. 15. 대출받은 5,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C의 대출채무 47,584,710원이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의 대출금이 C의 대출금의 변제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340,000,000원을 C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119,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대부분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보다 훨씬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2002년, 2006년, 2011년, 2012년)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유효하게 존속된 임대차계약인지 불분명한 점, 망인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받아 그에 따른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의 특별수익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분할협의 중 C이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존재하였던 H단체 명의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후 말소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위 기초사실과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O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분할협의(2019. 3. 6.) 당시 시가는 1,703,636,020원이고,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9. 11. 당시 시가는 1,737,903,480원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같을 것으로 추인되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사해행위 당시(2019. 3. 8.) 피담보채무는 287,307,396원(= 18,000,000원 + 269,307,396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 상당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부동산의 가액 1,450,596,084원(=1,737,903,480원-287,307,396원) 중 C의 상속지분 2/9에 해당하는 322,354,685원(=1,450,596,084원 × 2/9, 원 미만 버림)이고, 한편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100,086,983원이다.

위 피보전채권액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는 위 공동담보가액보다 적은 피보전채권액의 가액인 100,086,983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100,086,98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100,086,9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반정모

별지